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구관사 교환 공고

우리 지원 국유재산의 효용 제고 및 직원 관사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지원 구관사를 교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2. 3.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

1 교환 대상 국유재산 현황

가. 부동산(토지, 건물)

- 1)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-6 대 736㎡
- 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-6
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103.23㎡
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차고 19.8㎡
- 3)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-6 제1호
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97.92㎡
- 4)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-6 제2호
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97.92㎡

- 가. 교환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¹⁾은 금 380,124,530원(삼억팔천십이만사천오백삼십원정)
- 나. 우리 지원은 구관사인 국유재산(행정재산)을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직원용 관사(행정재산)로 사용 하고자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, 교환 재산이 서로 유사한 재산이고,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이며,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는 조건임.
- 다. 우리 지원의 구관사와 교환 할 부동산은 비교적 오래 되지 않은 아파트로서 24평 ~ 34평이 우선 교환 대상으로 삼을 예정임.
- 라. 위 부동산들은 일괄하여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무과(☎ 055-940-712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) 2019년 4월 기준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